

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

소관부서 : 문화예술과

제정 1996·3·1 조례 제 22호
일부개정 2014·8·8 조례 제1050호
일부개정 2017·11·10 조례 제135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이천시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·11·10>

[전문개정 2014·8·8]

제2조(구성) ① 이천시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·8·8>

② 위원장은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14·8·8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4·8·8>

1. 관계공무원

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·8·8>

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,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4·8·8>

제2조의2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본조신설 2014·8·8]

제3조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14·8·8>

1.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
2.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
3.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

제5조(지명의 조사)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, 지표물,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. <개정 2014·8·8>

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)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. <개정 2014·8·8>

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.

제6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관련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4·8·8]
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4·8·8>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·8·8>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
4.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

5. 그 밖의 중요한 사항

제9조(시행규칙)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·8·8>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·8·8 조례 제105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·11·10 조례 제135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